

##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

- 내달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접수
-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
-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실비 지원(40만원 한도)

□ 쪽방, 고시원,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용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「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(ˆ22.8)」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「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」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.

○ 대상은 쪽방, 고시원, 지하층 등\*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(5천만원)·자산(3.61억원)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.

\*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(국토부훈령) 제3조(입주대상자) 제1호 및 제3호

<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」 제3조(입주대상자) >

○ 제1호 :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·옴막 등, PC방, 만화방, 재해우려 지하층 등

○ 제3호 :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

○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\*이 가능해질 전망이다.

\* 기존 월세 30만원(자기부담)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+월세 30만원(자기부담) 주택으로 상향

□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**취급 은행\***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.

\* 우리은행, 국민은행, NH 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

○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, **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**

<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(민간임대 이주) >

구분	내용
소득 자산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연소득 : 본인(부부 합산) 총 소득 5천만원 이하</li> <li>▸ 순자산 :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('23년 3.61억원)</li> </ul>
대상주택	▸ 임차보증금 2억 이하 / 전용 85m <sup>2</sup> 이하, 1인가구 전용 60m <sup>2</sup> 이하
대출한도 및 금리	▸ 5천만원 / 무이자
용자기간	▸ 2년 만기 일시상환 (2년 단위, 4회 연장, 최장 10년까지 가능)
주요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(시·군·구청장 및 읍·면·동장 발급)</li> <li>▸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, 임차보증금 5% 이상 납부 확인서</li> <li>▸ 기타 대출 관계 서류 (가족관계증명원,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)</li> </ul> <p>※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</p>

□ 아울러,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**이사비·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**받을 수 있다.

○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,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**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**한다.

□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**주택도시기금 누리집**(www.nhuf.molit.go.kr)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.

-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,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,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(40만원 한도)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.
-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“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” 이라고 하며, “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익진 (044-201-4504)
		담당자	사무관	남궁부 (044-201-4740)



## 참고

## 「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」 상품 개요

구 분	주 요 내 용
대출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</li> <li>1.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</li> <li>2.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(공공임대)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(민간임대)를 받은 자</li> <li>3.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, 순자산가액이 3.61 억원 이하인 자 (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)</li> <li>4.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·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</li> </ul>
대출 대상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임차 전용면적 85m<sup>2</sup>이하(85m<sup>2</sup>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, 1인가구 전용 60m<sup>2</sup>이하 주택</li> <li>▶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</li> </ul>
호당 대출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: 5천만원</li> <li>▶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: 50만원</li> </ul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주택도시보증공사(임차보증금의 100% 이내), 한국주택금융공사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</p>
대출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민간임대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)</li> <li>▶ 공공임대 2년(9회 연장, 최장 20년)</li> </ul>
대출담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주택도시보증공사 :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</li> <li>▶ 한국주택금융공사 :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</li> <li>▶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(공공임대)</li> </ul>
상환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만기 일시상환</li> </ul>
대출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무이자</li> </ul>



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



◆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◆



신청기간

◆ '23년 4월10일부터 ~ 기금 소진 시 까지(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)

대출대상자

- ◆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 
[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]
- 지하층,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, 움막, PC방 등
-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

대상요건

소득기준	자산기준	소득기준	대출금리 및 대출한도	대출기간
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	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.61억원 이하	전용면적 85㎡ 이하,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	무이자, 보증금 5천만원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(임차보증금의 100% 이내) • 한국주택금융공사 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	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

※ 대출 대상주택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의 주택은 「공공임대 이주자 대출」 이용으로 신청

신청대상

- ◆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

신청절차



※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[고객서비스] - 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 - [자산심사 안내]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유의사항

- ◆ 대면 접수만 가능
  - 우리은행, 국민은행, 농협, 신한은행 지점 (4월 10일부터 접수 가능)
  - 하나은행 지점 (5월 1일부터 접수 가능)
- ◆ 상기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
- ◆ 「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」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
- ◆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,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(0.1%p or 2.0%p) 부과와 대출 기간연장 등 불가
- ◆ 기금 중복대출 불가
- ◆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
  - 주택도시기금포털 : <http://nhuf.molit.go.kr>
  - 기금e든든 : <http://enhuf.molit.go.kr>
- ※ 「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」는 소재지 주민센터 문의

전화문의

우리은행 1599-0800	KB 국민은행 1599-1771	하나은행 1588-1111	NH농협은행 1588-2100	신한은행 1599-8000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